

보도시점 2025. 10. 27.(월) 12:00 / 배포 2025. 10. 27.(월) 08:30
<10.28.(화) 조간>

핵심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게 한 이오시스템 제재

- 방향포경 계수기 조립체 독점 생산자에게 공급을 거절하도록 해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**주식회사 이오시스템**(이하 '이오시스템')이 방향포경^{*}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^{**}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(이하 '신보')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**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**에 대해 **시정명령**(행위중지명령, 향후 행위금지명령, 통지명령)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.

* 대포의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

**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여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부품

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(이하 '한화에어로스페이스')의 K-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,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(이하 '우경광학')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**공급하지 못하게 하였다**.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**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었다**.

*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하였으며, 이후 양사는 "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, 양도, 외주생산 등의 경우 **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**" 계약을 체결(2013. 7. 11.)

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(신보의 우경광학에 대한 '계수기 조립체 공급 여부' 문의에 대한 부동의)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**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, 이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**.

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,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.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하여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

※ 방산업체 추가 지정 관련 규정

「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」 <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, 2009. 1. 9.>
제13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(방산진흥국장)에게 (중략)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
제16조 ① 방산진흥국장은 (중략)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.

공정위는 앞으로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**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**.

<붙임> (주)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

담당 부서	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	책임자	과장	류용래 (02-2110-612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제 (02-2110-6124)



불임

㈜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

1 관련 제품

- 이 사건 관련 제품인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고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 기능 부품이다.
- 해당 계수기 조립체는 미국에서 최초 개발한 것을 방위사업청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신보가 국산화하였다.
- 해당 계수기 조립체가 사용된 방향포경은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-9 자주포와 K-55 자주포에 적용된다.

〈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, 자주포의 관계〉



2 기초 사실

- 2011년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당시 유일한 방향포경 생산업체였던 이오시스템은 계수기 조립체 성능 시험 등에 참여하였다.
- 국산화가 완료될 무렵인 2013년 7월 우경광학이 방향포경 생산업체로 추가 지정되었고, 이오시스템은 같은 달 11일 신보와 제삼자에 대한

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건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.

2. “갑”과 ‘을’이 공동 개발한 계수기 조립체 부품에 대하여 “을”은 “갑”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“갑” 이외의 제3자에게 본 계수기 조립체 부품에 대한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, 위임, 위탁, 하도급, 외주생산,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.

- 우경광학이 2014년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향포경 납품을 위해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요청했을 때 이오시스템이 최초에는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결국 공급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방향포경 사업을 영위하였다.
- 2020년 6월 이오시스템은 신보에 2013년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였다.

1. 목적

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완료된 부품의 물품공급에 대한 기 합의 사항을 합의서로 재확인하고자 함.

2. 확인 요청

첨부된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합의서에 서명 후 재발송 바랍니다.

(3) “**同一 부품**”의 제 3자 공급 관련 구체적 합의 내용

“**同一 부품**”에 대한 “갑”, “을”的 공동개발 취지를 고려하여 “을”은 방위사업청 직납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급요청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“갑”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“갑”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“**同一 부품**”에 대한 공급뿐 아니라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양도, 위임, 위탁, 하도급, 외주생산,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한다.

3 법 위반 내용

- 2022년 6월 **한화에어로스페이스**가 수출 사업을 위해 방향포경 생산업체들에 방향포경 견적 제출을 요청하여 우경광학이 신보에 계수기 조립체 견적을 요청하자, 이오시스템은 공급 불가 방침을 정하였고 신보는 이에 따라 계수기 조립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.

- 우경광학은 계수기 조립체 공급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방향포경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였고,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었다.

- 이오시스템은 2023년 1월 우경광학의 기존 납품분 A/S용 계수기 조립체 공급요청에 대해서도 공급하지 말라고 하였고 신보는 이에 근거하여 판매 불가를 회신하였다.

4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

- (적용법조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제1항 제1호
(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)

- (조치내용)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에 거래거절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동일·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고,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요청하였던 사업자들에게 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.

5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이번 조치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어야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어^{*} 참여 기업이 한정되는 특수성이 있는 방위산업에서,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

* 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 ① 방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- 이는 과거 특정 방산물자의 생산을 특정 방산업체에 맡기던 것을,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「방위 사업법」 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. (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)

* 「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」(지식경제부 훈령 제28호,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)
제13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(방산진흥국장)에게 (중략)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16조 ① 방산진흥국장은 (중략)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.

-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수한 사정으로 제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,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.

참고1**방산업체 지정 제도 변천사**

- 1983년 도입된 **전문화·계열화 제도***는 특정 업체에 특정 무기 생산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에 **독점적 지위**를 보장하였다.

* 구 「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①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다.

- 이는 초기 방위산업 성장에는 유효하였으나, 업체가 **기득권에 안주해 비용 절감·기술개발에 소홀히 하는 등 경쟁력 저해** 문제가 발생하였다.

- 2006년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「방위사업법」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**전문화·계열화 제도**는 유예기간 끝에 2008년을 끝으로 **폐지***되었다.

* 「방위사업법」부칙 <법률 제7845호, 2006. 1. 2.> 제6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「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·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「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

- 2009년 **방산업체 추가 지정** 규정이 정비*되었고, 2012년에는 방산 물자의 **가격·품질 경쟁력 강화**를 이유로도 추가 지정이 가능**하게 되는 등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체계가 도입되었다.

* 「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」 <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, 2009. 1. 9.> 제13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(방산진흥국장)에게 (중략)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16조 ① 방산진흥국장은 (중략)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.

** 「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」 <방위사업청 훈령 제174호, 2012. 4. 24.> 제16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.
6. 기타 군사전략, 후속군수지원 및 방산물자의 가격·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

참고2**(주)이오시스템 일반현황**

(연도말 기준, 단위: 백만 원)

연도	자산총액	부채총계	매출액	당기순이익	설립일
2022	112,142	83,738	58,226	560	1979. 3. 6.
2023	107,249	73,456	108,421	5,383	
2024	114,586	74,837	90,430	6,158	